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18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1.
3. 회부연월일 : 2024.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은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은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된 후에 의무복무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은 취지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장려금의 수혜 대상을 단기복무 부사관, 부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군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학생, 병 출신 단기복무 장교 전형 합격자,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 ----- ----- -----, <단서 삭제>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u>사관후보생과정</u> 의 학생	2. ----- ----- <u>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정</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단기복무 장교 전형에 합격하여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u>
<신설>	5.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신 설> ② (생 략)	부사관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단기복무 장교를 위한 군 장려금(이하 “단기복무장려금”이라 함) 제도는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군·학사장교 지원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임. 2025년 기준 단기복무장려금은 1인당 1,200만원을 지급하며, 임관 이전에 지급함(비과세).

한편, 단기복무장려수당 제도는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¹⁾에 따라 우수한 자질의 부사관을 획득하기 위해 부사관 임관 후 2개월 이내에 봉급과 함께 지급하고 있음. 2025년 기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며, 임관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단기복무장려금과 다르게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음²⁾.

□ 현행법에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³⁾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

- 1)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월봉급액의 12개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임기제부사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2) 장교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은 임관 전에 지급되는 보상 차원으로 비과세하는 반면,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은 임관 후 지급된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3) 「군인사법」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한정⁴⁾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간부사관후보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병 출신 단기복무 장교전형 합격자 등의 경우 지원에 의한 단기복무임에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단기복무부사관은 학군·학사장교와 같이 일정 기간의 복무를 약정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단기복무장려수당만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⁵⁾.

□ 따라서, 개정안은 ① 병 출신으로써 단기복무장교 전형에 합격하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교 지원율을 제고하고, ②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부사관후보생과정 학생 및 단기복무부사관에게까지 확대하며, ③ 가산복무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단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간 형평성을 맞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구분한 이유는 대학교 재학 시절 학사장교 지원을 염두에 두지만 미선발될 가능성을 고려(미선발시 현역 등으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하여, 진로 선택의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장교후보생 제도(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를 마련한 것임.

5) “한 달 소득세 갑자기 2백만 원” 장교 아닌 부사관만 받는 세금폭탄, KBS, 2024.4.2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4599&ref=A>) 등 참조

추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가산복무지원금과 단기복무장려금의 중복 지급과 관련하여, 양 제도의 목적과 취지, 재정여건, 인력수급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산복무지원금은 중기복무자, 단기복무장려금은 단기복무자를 확보하기 위한 재정지원 제도로써,

예산 증액 없이 현 예산 범위에서 추진될 경우 전체 지원 대상자 수가 줄어들어 가산복무지원금을 받은 중기복무자 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혜자 규모가 축소되어 군 간부인력 모집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둘째, 개정안 제5호의 단기복무부사관의 범주에 제2호의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 포함되므로⁶⁾ 중복하여 입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임.

셋째, 개정안 제6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단기복무장교 전형에 합격하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에는 경우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6) 「군인사법」 제6조 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2.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제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포함될 수 있는 바⁷⁾ 불필요한 중복입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예비역 부사관 중 단기복무장교 지원자를 배제하게 되는 바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보임.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라 비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단순히 “장려수당”의 명칭을 “장려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 지급 시기를 입관 전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⁸⁾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는 이상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력의 군 유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장려금 지급 대상을 부사관 출신이 아닌 병 출신 단기복무 장교로 한정할 점, 비과세 적용의 현실적 한계, 예산 재분배에 따른 군 인력구조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단기복무 간부의 지원을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며, 부사관에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가산복무

7) 「군인사법」 제6조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8) 현재 장교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은 입관 전에 지급되는 보상 차원으로 비과세하는 반면,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은 입관 후 지급된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지원금과 장려금의 중복 지급은 사업의 취지, 국가재정,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